

#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.

행정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 및 발의자 : 2019. 2. 11.(월), 진선미 의원 등 14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8.(화) (의안번호 제85호)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진선미 의원

나. 제안이유

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 할 경우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따라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1) 설치·관리자의 책무로 안전사항을 추가 (안 제4조)

2)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장치 설치 근거마련 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
3) 합 의 : 청소행정과(청소행정담당팀)와 합의되었음

4) 입법예고 (2019. 2. 12. ~ 2. 16.) 결과 : 의견 없음

### 3.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

-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04년 7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
- 현행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4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되었음.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의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문제 관련 사회적 우려가 있음. 관내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 설치·관리자의 책무로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한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됨

- 안 제5조 설치기준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,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규정으로 사료됨

<b>다.</b>	<b>공중화장실 주요 현황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- 경찰청의 2017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총 2,08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음. 이 가운데 강제추행 및 강간 등 강력범죄가 138건, 절도 531건, 폭행 등 폭력범죄 211건, 성폭속범죄가 551건 등등이 있음
- 강동구 내 공중화장실은 총 32개소로 수세식 29개소, 재래식 3개소를 운영 중임. 민간개방화장실은 총 32개소로 모두 수세식임. 민간개방화장실 12개소는 현재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고 16개소는 2019년 예산에 1,632만원 편성되어 진행 중임

<b>라.</b>	<b>종합 검토의견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- 강동구의 경우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
- 안 제4조의 설치·관리자의 책무가 의무부과가 아닌 권고적 사항이고 설치 기준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상 명문화된 예시 외의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됨
- 다만,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시 성능 및 규격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 그리고 안전장치설치 관련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, 개방화장실은 여성가족과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음. 앞으로 부서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- 또한, 민간개방화장실은 사유재산으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 없음

#### 5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

##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#### 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